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재심사청구란 무엇인가요?

A. 재심사청구란 2009.7.1 이후 출원한 건에 대해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면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를 하는 것이며 재심사 후 재거절결정이 된 경우는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재심사청구는 취할 수 없습니다. 재거절결정이 되거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특허법 제67조의2)

Q. 재심사청구료는 얼마입니까?

A. 특허 재심사청구료는 기본료 100,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0,000원이 가산되며 보정료(서면제출시 13,000원, 전자문서제출시 3,000원)을 함께 납부
 실용신안 재심사청구료는 기본료 50,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이 가산되며 보정료(서면제출시 13,000원, 전자문서제출시 3,000원)을 함께 납부
 디자인 재심사청구를 위한 보정료는 전자문서로 제출시 매건 30,000원이며 서면 제출시 매건 40,000원입니다.
 ※ 재심사청구료는 감면·면제대상 수수료가 아닙니다.

Q. 미생물 기탁기관은 어느 곳인가요?

A. 국내기탁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KACC)
 국제기탁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서울의대 암연구소내 한국세포주 연구재단(KCLRF)
 한국에만 출원하려면 국내기탁기관에만 기탁하면 충분하고, 추후 PCT나 외국 출원을 하실 경우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합니다.

